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경기남부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2. 14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변경 전) 견책 10명, 경고 : 26명(기 공시일 : 2024.1.16.(공시번호 24-03)) 변경 후) 견책 8명, 경고 : 28명 ※ 변경 사유 : 이의신청 심의결과 인용(2024.2.14.)에 따른 제재 조치(요구)내용 변경 (견책 2명 → 경고 2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

가. 자기자본 부담금 예치 업무 소홀

- 2급 서○○ 외 2명은 주택건설자금대출 1건 취급 시 대출한도를 총 공사금액의 80%로 산정하려면 차주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하여 자기자금부담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하나 대출실행일 이후에 자기자금부담액을 예치함.

나. 감정평가 업무 소홀

- 전문계약직(지점장) 장♀♀ 외 5명은 주택건설자금대출 12건에 대하여 건물 준공 후 약 6개월~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을 실시하였음.

다. 채권보전 업무 부적정

- 2급 이♠♠ 외 3명(3건), 전문계약직(지점장) 장♀♀ 외 5명(12건), 2급 예♀♀ 외 2명(1건), 2급 염●● 외 6명(2건)은 주택건설자금대출 18건에 대하여 취급 및 건물 준공 후 외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담보가액을 산출한 결과 대출잔액이 담보가액 대비 총 7,129,828천원(감사일 기준) 초과함에도 추가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.

라. 대출금 회수 업무 부적정

- 2급 이♠♠ 외 2명(1건), 전문계약직(지점장) 장♀♀ 외 3명(5건), 1급 박☎☎ 외 2명(1건), 2급 김ㄱㄱ 외 4명(1건), 2급 우☒☒ 외 2명(1건), 2급 염●● 외 8명(2건), 1급 이☆☆

외 2명(1건)은 주택건설자금대출 12건에 대하여 차주가 임대보증금 7,800,000천원 중 일부인 2,457,020천원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259조(후취담보 취득시 유의사항)
2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5편 제455조(대출한도), 제457조(특약사항), 제463조(채권보전)
3. 「수협 여신거래기본약관」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, 제8조(여신관리)